의안번호	5116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의 원	김현미 의원 외 8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16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7일
발 의 의 원 : 김현미,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병남, 안신일 의원(9명)

1.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지원하고,

○ 관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외에도 지역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시 차원에서 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지원계획을 상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필요한 경우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국가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로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촉진을 위해 시 산하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기타 : 현행 조례 (붙임 3)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교육, 향유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 문화예술”을 “장애문화예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

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현황 및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관한 사항
2. 창작·연습·전시·공연 및 교류를 위한 활동공간과 문화시설의 이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유통·판매·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 현황
4. 그 밖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을 “장애인 및 장애문화예술인의”로, “위하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예술인을 육

성·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2. 문화예술 창작·실연·전시·공연 활동 지원
3.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역량 강화
4. 장애문화예술인의 작품 발표 및 유통·홍보 지원
5.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자립 기반 조성
6.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장애문화예술인의 전문예술인 진입 및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물에 관한 정보 제공, 전시·홍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교육, 향유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

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4. (생 략)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 1. (현행과 같음) 2. 장애문화예술----------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삭 제>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현황 및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관한 사항 2. 창작·연습·전시·공연 및 교류를 위한 활동공간과 문화

	시설의 이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유통·판매·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 현황 4. 그 밖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 장애인 및 장애문화예술인의 ---------- 활성화하고 장애예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 1. 장애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2. 문화예술 창작·실연·전시·공연 활동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역량 강화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4. 장애문화예술인의 작품 발표 및 유통·홍보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자립 기반 조성
<신 설>	6.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신 설>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신 설>	8. 장애문화예술인의 전문예술인 진입 및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
<신 설>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물에 관한 정보 제공, 전시·홍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9. 27.>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

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